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076
----------	------

발의연월일 : 2017. 7. 19.

발의자 : 박홍근 · 신경민 · 정재호

박재호 · 전현희 · 안규백

변재일 · 설훈 · 전혜숙

김병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 임기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원으로 임명된 후임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도 3년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는 결원된 위원의 후임 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규정하거나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명확하게 규정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임기) (생략) <u><신 설></u>	제7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 터 계산한다.